

해외주재원 관리규정(예시)

1. 【목 적】

이 규정은 (주)_____ (이하 “회사”라 함)의 해외법인(합작사 포함) 및 해외지사(이하 “해외법인”이라 함) 주재원에 대한 선발, 교육, 복무, 급여, 복지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해외법인 주재원의 제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및 기타 회사의 규정에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은 국내직원, 주재원 및 현지 채용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1. 해외법인 : 해외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국내에서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해외투자 허가를 받고, 주재국 법률에 의거 해외에 설립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조직(현지 단독법인/현지 합작법인)
- 3-2. 해외지사 : 해외에서의 회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영업활동과 정보 및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설치된 기구의 총칭으로서 해외지역본부, 해외법인, 해외사무소로 구분한다.
- 3-3. 주재원 : 본사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법인/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 3-4. 장기파견자 : 본사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을 해외법인/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관련 처우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 규정한다.
- 3-5. 단기출장자 : 본사의 명에 의하여 6개월 미만의 기간을 해외법인/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관련 처우는 당사 규정의 출장여비지침에 따른다.
- 3-6. 현지채용인 : 주재국의 거주 한국인으로 주재국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

4. 【주재원의 자격】

다음과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 한다.

- 4-1. 해외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4-2.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단 경력사원 채용자는 경력 반영)
- 4-3. 해당지역 언어구사가 가능한 자
- 4-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주재원 소속】

해외근무 주재원의 소속은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6. 【주재원이 해외근무서약】

해외 주재원 근무명령을 받은 자를 관계법령과 사규를 준수하고 국가와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해외 주재원 서약서(별지서식 제1호)를 각서하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주재기간】

해외 주재원의 주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8. 【해외주재 중 퇴직금지】

8-1. 해외주재원은 해외 근무 중 임의의 사유로 퇴직할 수 없고, 개인상병 이외의 사항으로 휴직할 수 없다.

8-2. 전항의 임의 퇴직 시 해외근무를 위해 회사가 지출한 경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내용은 주택지원비, 항공비(가족포함), 이사비용, 자녀교육비, 체제비 등을 포함한다.

8-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8-3-1. 본인이 사망한 경우

8-3-2. 정년에 달한 경우

8-3-3. 신체의 장애로 근무가 불가능 한 경우

8-3-4.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본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8-3-5. 회사내부 인사결정에 의한 경우

9. 【주재원의 직위】

9-1. 주재기간 중 주재원은 본사 임직원의 직위를 유지하며, 급여, 상여, 승진, 근속기간 등에 있어 본사 임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9-2. 주재원은 현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직명을 부여 할 수 있다.

10. 【강제귀국】

주재원은 다음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강제 귀국케 할 수 있다.

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10-2. 자기사업에 종사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10-3. 상사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10-4. 국익을 손상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10-5. 단체행동에 가담하거나 타인을 선동하는 행위

10-6. 기타 현지실정에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11. 【징 계】

본사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12. [손해배상]

주재원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3. [현지인 채용]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 근무를 목적으로 현지인을 채용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13-1. 현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검토한다.

13-1-1. 자질의 적합성

13-1-2. 현지 근로관계

13-1-3. 근로조건

13-1-4. 기타 필요한 사항

13-2. 현지채용 직원의 근로조건은 현지의 제반사항(학력,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내 임직원이 해외근무로 지급 받는 제 복리사항(주재수당, 숙소제공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13-3. 현지채용 직원의 채용, 승진, 급여 등은 해외법인에서 담당한다.

14. [주재원의 인사]

14-1. 주재원의 정기급여 조정, 승격 등 기본적인 인사관리는 본사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

14-2. 주재원이 회사로 귀임할 때는 본사 인사관리 기준에 의거 배치 발령한다.

15. [근무시간 및 휴일]

15-1. 해외주재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관련에 따른다.

15-2. 해외주재원은 매일 근태현황을 익월 3일까지 본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5-3. 휴일은 주재국의 법정휴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 본국의 법정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

16. [출 장]

16-1. 해외주재원의 출장은 본국출장, 주재국내 출장, 타국출장으로 구분한다.

16-2. 주재원의 본국출장 및 주재국내 출장은 현지 또는 본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타국출장의 경우에는 본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16-3. 출장 여비는 다음과 같다.

16-3-1. 본국출장 및 타국출장의 여비지급은 본사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16-3-2. 주재국내 출장은 주재국 출장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6-4. 비자 연장 등으로 인한 본국출장은 가능한 한 특별휴가기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17. [급 여]

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본사 급여기준에 의거 본사직원과 동등하게 지급하며 별도의 주재수당을 지급한다.

17-1. 주재수당

17-1-1. 주재수당은 연봉제 및 월급제, 일급제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1) 연봉제 : 본사 기본급의 50%를 매월 지급한다.

(2) 월급제 : 본사 기본급의 50%를 매월 지급한다.

(3) 일급제 : 부임 당시 기본급의 50%를 매월 지급한다.

17-1-2. 주재수당 지급 시 월중 부임 또는 귀임 시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부임 출국일 또는 귀임 입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17-1-3. 해외주재 근무와 관련된 수당은 퇴직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7-2. 임금지급

본 규정에 의한 주재원의 급여는 본사직원과 동등한 임금(급여, 상여금, 년월차수당 등)을 해외 주재원이 지정하는 본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고, 해외주재 근무와 관련된 수당은 해외 법인에서 주재국 통화로 지급한다.

17-2-1. 주재수당의 현지 세금(소득세 등)은 개인이 부담하며 현지 통화로 지급한다.

17-2-2. 주재수당의 지급일은 해외법인의 급여지급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8. [복리후생]**18-1. 휴가****18-1-1. 경조휴가**

경조휴가 및 경조금은 본사 경조휴가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단, 본국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해외법인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2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왕복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18-1-2. 특별휴가

(1) 해외법인 또는 지사는 년 2회(반년 1회)의 특별 유급휴가를 준다.(명절, 하기휴가 포함)

(2) 상기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외 법인장은 본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8-1-3. 부임 및 귀임휴가

해외주재원으로 부임 또는 귀임 시 신변정리를 위한 휴가는 가족동반시에는 6일, 단신 거주자는 3일로 한다.

18-1-4. 기타 사유로 본인의 귀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제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18-2. 가족동반

- 18-2-1. 주재원이 기혼자인 경우 부임 6개월 이후 가족동반 현지 거주가 가능하다.
- 18-2-2. 동반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미혼 자녀이다.
- 18-2-3. 동반가족에 대한 항공권 지원은 주재원 비자를 획득 후 최초출국 및 영구 귀국 시만 지원한다.
- 18-2-4. 해외주재원 가족동반에 관한 주관부서를 본사 관리부서로 한다.
- 18-2-5. 해외주재원 가족동반에 필요한 제경비는 부임시에는 본사에서 귀임시에는 해외 법인에서 지원한다.

18-3. 주택지원

- 18-3-1. 주재원이 가족을 동반할 경우 해외법인 및 지사 반경 100km이내의 위치에 주택을 지원하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주택임대차 계약은 해외지사 명의로 체결한다.
 - (2) 주택지원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현지법인 및 지사에서 지원한다. 단, 현지국 사정 및 자녀교육등의 사유로 대표이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기준을 확대/축소할 수 있다. 단, 기혼자 중 가족 방문시 연간 20일 한도로 숙박비 만을 지원한다.

구 분	예) 중국		비 고
	가족동반시	가족미동반시, 미혼자	
중개료	실비지원		
월 임대 및 관리비	4,000元 한도	기숙사 지원	

- (3) 주택지원 경비의 지급시기는 최초 임차 계약시부터 지급하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가족동반시 타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경우 지원금 내에서 지원한다.
- 18-3-2. 상기 주택 임차관련 비용은 현지법인인 경우 현지법인에서 부담하며, 해외지사인 경우 본사에서 부담한다. (부대관리비, 하자보수비, 제세공과금 등은 현지법인에서 부담한다.)
- 18-3-3. 현지법인 및 지사에서 주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주택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 18-3-4. 미혼자의 경우에는 회사 기숙사를 지원한다. 단, 해외법인 및 지사장의 건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지원한다.

18-4. 이사비용 지원

- 18-4-1. 해외주재원이 이사 운반시 20ft내 선박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 등 운송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지원한다.
 - (1) 이사비용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며 탁송절차를 회사가 관장하여 지급한다.
 - (2) 부임시 비용은 본사에서 지원하고 귀임시에는 현지법인에서 지원한다.
- 18-4-2. 자동차, 가축 등 특수비용을 요하는 품목 및 일상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품목의 운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 18-4-3. 주재국 거주 중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사할 경우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8-5. 자녀교육비 지원

18-5-1. 주재원의 자녀가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 2인 이내에서 지원한다.

18-5-2. 자녀의 교육비는 초, 중, 고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예) 중국		비 고
	초, 중등부	고등부	
입학금 및 학비 등	1,000元(위엔화)	\$1,550	년간 지원한도

18-5-3. 자녀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주재원은 매 납기마다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외법인에 제출한다.

18-6. 차량 및 유류비 지원

18-6-1. 차량은 법인장의 건의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다.

18-7. 의료비

18-7-1. 의료보험료

현지 의료보험 가입시에는 주재원과 동반가족의 의료보험료를 해외법인/지사가 지원한다.

18-7-2. 건강진단

주재원은 년 1회에 한하여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정기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은 해외법인 해외지사가 부담한다. 사후에 정기 건강진단 결과를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18-7-3. 의료비 지원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상해시에는 주재기간동안 의료비는 회사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단, 평소 개인질환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18-8. 재해상해보험

주재원에 대한 재해상해보험은 회사에서 지원한다.

18-9. 통신비 지원

주재원의 통신기기 및 통신료는 법인장의 건의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 지원한다.

19. [기 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재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